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6 . 23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7 . 27.
- 다. 상정일자 : 1999. 7. 28.제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 제안이유

-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허가: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제16조,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17조 제목,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 나. 제16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3호, 제22조중 “허가”를 “신고수리”로 한다.

## 4. 검토의견

### ■ 관련법을 살펴보면

- 동조례 제16조(사용허가)에 의거 시설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장은 읍면장이 겸하도록 되어있음.

## ■ 종합검토결과

- 현재 읍면종합복지회관(미탄,방림,봉평,용평)의 사용신청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일부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읍면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편익 차원에서 구두상의 신고로 접수받고 있는 실태이며 주민의 시설사용에는 특별한 제약이나 불편이 전혀 없으나,
- 읍면장이 겸하게 되어 있는 관장에게 시설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시설사용자에게 절차상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신고”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운영실태를 판단할 때 개정전과 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임.